



고용노동부

고용노동부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지침 시달

1. 최근('20.1.27) 보건복지부의 「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」에 의한 감염병 위기 경보가 격상(주의 → 경계)됨에 따라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감염병 예방조치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.
2. 이에 붙임과 같이 「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지방관서 업무처리 지침」 및 「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」을 시달하니 감염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▶ 「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지방관서 업무처리 지침」(지방관서·공단 자체용)
 - 동 지침에 따라 소속 직원, 청사 내 근로자 및 방문민원인 보호조치
 - ▶ 「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」(사업장 전파용)
 - 동 지침을 기관 홈페이지 게시하고, 사업장 지도감독 시 전파 및 지도·홍보
 - 관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및 고객응대서비스업 사업장* 등에 전파
- * 항공사, 병원, 대형마트, 운수업체 등

- 붙임 1.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지방관서 업무처리 지침 1부.
2.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1부. 끝.

고용노동부장관



수신자 지방노동관서(산재예방지도과장), 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

전문위원 **최선미** 보건사무관 **이종걸** 산업보건과장 **전결 2020. 1. 29.**
김동욱

협조자

시행 산업보건과-439 (2020. 1. 29.) 접수

우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(어진동 581 고용노동부) 세 / www.moel.go.kr
종정부청사 11동

전화번호 044-202-7739 팩스번호 044-202-8093 / mimi17@korea.kr / 비공개(5)

" 모든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"